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588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47,912,8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47,912,8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본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하였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것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47,912,800원 상당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47,91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C이 아들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거래처로부터 아들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47,912,800원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47,912,800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정적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C이 거래처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47,912,8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C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C이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점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림